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교 원 등 의 연 수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도교육청의 자격연수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국립 특수교육원을 연수기관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립특수교육원을 교원 대상 연수기관으로 보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제8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이 관장하고 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 연수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소속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나. 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교원 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교원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연수 운영 방법 및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단서규정 마련(안 제6조제3항)

시도교육감의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격 연수 운영 관련 권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 중 “중앙교육연수원이 같은 영 제27조제1호”를 “중앙교육연수원과 국립특수교육원이 같은 영 제27조제1호 및 제23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복직자 대상 직무연수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세부적인 연수 운영 방법 및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① ~ ⑦ (생략)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u>중앙교육연수원이</u> 같은 영 제27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그 종류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본다.		⑧ ----- <u>중앙교육연수원과 국립특수교육원이</u> 같은 영 제27조제1호 및 제23조 제3호----- ----- --.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① 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① -- ----- -----.		
1. 다음 각 목의 직무연수		1.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u><신 설></u>		나.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u>복</u> <u>직자 대상 직무연수</u>		
나. (생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		③ ----- ----- ----- -----		

다),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수석교사과정, 원감과정, 원장과정, 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고, 연수할 사람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 . 단, 세부적인
연수 운영 방법 및 연수기관 지
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연 락 처	(044) 203 - 6478